

전주지방법원 2021. 7. 13 선고 2020가단3017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6. 22.

판 결 선 고 2021. 7. 13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1 지분에 관하여 2020. 1. 18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8,013,31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8,013,3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O 원고는 D 주식회사가 소외 C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 채권을 E 주식회사, F 주식회사를 거쳐 순차 양수한 채권자로서 소외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187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. 3. 26. C은 원고에게 3,048,000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, 위 명령은 2013. 4. 16. 확정되었다.

O C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다른 금융기관에도 많은 채무를 부담한 무자력의 상태에서 2020. 1. 18. 아버지인 G이 사망함으로써 공동상속하게 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1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2020. 2. 25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O C과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C과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O 따라서 위 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나, 2020. 4. 7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H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.

O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65,000,000원(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)에서 58,000,000원(I 아파트 시세 기준) 사이이고, C의 상속지분의 가액은 10,545,454원에서 11,818,181원 상당으로 원고의 위 피보전채권액(원금 3,048,000원 및 이에 대한 2013. 4. 2.부터 2021. 5. 24.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4,966,317원의 합계액 8,013,317원)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8,013,371원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

O 따라서 C의 상속지분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8,013,37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8,013,371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적용 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 본문, 제1항 본문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판사 정은영

별 지

목 록

1. 건물의 표시

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, 아파트 동 호

[도로명주소]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

철근콘크리트옹벽조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15층 아파트

지하 지하주차장 3111.20㎡

대피소 182.15㎡

기계실, 전기실 195.99㎡

1층 아파트 754.205㎡ 2층 아파트 756.905㎡

3층 아파트 756.905㎡ 4층 아파트 756.905㎡

5층 아파트 756.905㎡ 6층 아파트 756.905㎡

7층 아파트 756.905㎡ 8층 아파트 756.905㎡

9층 아파트 756.905㎡ 10층 아파트 756.905㎡

11층 아파트 756.905㎡ 12층 아파트 756.905㎡

13층 아파트 756.905㎡ 14층 아파트 756.905㎡

15층 아파트 756.905㎡

부속건축물

정화조, 전기실 5.04㎡

노인정 43.76㎡

관리사무소 32.88㎡

공중변소 12.00㎡

[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]

전주시 덕진구 J

[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]

제1층 K호 철근콘크리트 옹벽조 69.40㎡

[대지권의 표시]

종류: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: 6465000분의 20420

끝.

